

일본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한 철 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집]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재순서]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노인복지 관련법제 - 독일, 프랑스, 중국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미국, 일본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I. 서론

II. 일본 중소기업관련법제의 구조

1. 일본의 중소기업관련법령
2. 중소기업관련법령의 분류

III. 중소기업기본법

1. 개관
2. 중소기업의 범위
3. 국가의 시책
4. 중소기업정책심의회

IV. 하도급에 대한 규제

1. 일본의 하도급관련법제
2.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과 건설업법
3. 하청중소기업진흥법

V.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자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대기업자의 의무
3. 조사, 조정의 신청, 조정권고 및 조정명령
4.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VI. 결론 - 한국과의 비교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이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양극화로 형성된 사회빈곤층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구체적인 각론으로 보편적 복지, 영세사업자 지원 및 보호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주제 역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뜨거운 이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3월 3일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13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의 기준 마련과 지정·점검, 대·중소기업 대표단체들 간 소통의 중추적 역할 및 규범준수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¹⁾ 2012년 1월 17일에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²⁾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논의는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졌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논의의 역사적 배경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다. 대기업 중심,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낙후된 상태를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상생협력법이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확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슈용, 구호용 특별법의 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기존의 중소기업 관련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와 개선, 철저한 준수와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중소기업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1)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inwingrowth.or.kr/introduce/intro.jsp>).

2)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국의 법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일본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법제의 형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하며, 과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역시 일본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 중소기업관련 법제의 이해는 우리에게 실천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 중소기업관련법제의 구조를 살펴본 뒤, 그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II. 일본 중소기업관련법제의 구조

1. 일본의 중소기업관련법령

중소기업은 일본 전체 기업수의 99.7%를 차지하고, 고용의 62.8%를 담당하고 있다.³⁾ 이렇게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많은 법령들이 존재한다.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지원법’,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의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그 수가 매우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법령들의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있다. 그런데 이들 법령들은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법이 되어 왔다.⁴⁾ 예를 들면 금융의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⁵⁾ 노동의 측면에서는 ‘중소기업노동력확보법’,⁶⁾ 거래보호의 측면에서는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등 특별

3) 일본 2012년 중소기업백서(<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4/H24/index.html>).

4) 島川 勝, “日本の中小企業法の問題点とロースクール教育”,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법제의 비교와 과제(한국법제연구원·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138면.

5) 법령의 원제목은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일본 총무성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 <http://lawe-gov.go.jp/>, 이하 일본 법령의 내용은 이 사이트를 참조).

6) 법령의 원제목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노동력의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법의 형태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맞추어 입법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⁷⁾

2. 중소기업관련법령의 분류

상황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져 온 만큼 중소기업관련법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관련법제들은 대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 규율 태도에 따라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제, 둘째, 대기업에 대한 규제 법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구분하였을 때, 대부분의 중소기업관련법령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중소기업도 기업이므로 일반 법률인 민법, 상법, 노동법, 독점금지법⁸⁾,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규율을 받지만,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법률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업행태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규제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기업부터 소규모 기업까지 중층의 위계적 구조를 이루어 그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대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거래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⁹⁾ 그리고 대기업이 자신의 규모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법인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을 개관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시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도급거래의 규제와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범위 조정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하도급 관련법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규제법제로서의 법률(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건설업법)과 지원법제로서의 법률(하청중소기업진흥법)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⁰⁾

7) 島川 勝, 앞의 논문, 138면.

8) 법령의 원제목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독점금지법으로 약칭함.

9) 물론 하도급 분야에서도 ‘하청중소기업진흥법’과 같이 지원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 있다.

10) 이하에서 일본의 법률을 설명할 때 직역과 의역을 혼용하였음을 밝힌다. 본 글은 일본 법률의 단순한 번역이 아닌, 일본 법제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중소기업기본법

1. 개관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있다. 총 4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일본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이념과 국가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¹⁾ 이 법률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그 기본이념, 기본방침, 그 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본법 제1조). 이 목적을 위한 기본적 시책으로 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창업의 촉진, ②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③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의 적응 원활화, ④ 자금 공급의 원활화 및 자기자본의 충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2조).

-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외의 업종(아래의 업종은 제외한다):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백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
- ② 도매업: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1억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백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
- ③ 서비스업: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백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
- ④ 소매업: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일본의 중소기업관련법령 대부분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11) 島川 勝, 앞의 논문, 137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¹²⁾

3. 국가의 시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시책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12조~24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창업의 촉진(제13조): 창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연수의 충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 ② 교류 또는 제휴 및 공동화의 추진(제16조): 중소기업자의 교류 또는 제휴의 추진, 중소기업자의 사업 공동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조성,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 ③ 거래의 적정화(제20조): 하청 대금의 지불지연의 방지, 거래조건의 명확화 촉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 ④ 국가등으로부터의 수주기회 증대(제21조):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역무 등에 대한 수요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등의 물품·역무 등의 조달에 관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의 증대,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 ⑤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의 적응 원활화(제22조):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의 사업활동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해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거래처 기업의 도산의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관해서 실시하는 공제제도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4.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경제산업성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둔다(제26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2) 그러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6조).

-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은 25.5%의 세율을 적용함.
-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 법인 중 연소득금액이 8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5%의 세율을 적용함.
-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 법인 중 연소득금액이 800만 엔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9%의 세율을 적용함.

- ① 정부가 중소기업의 실태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때 의견제시(제10조)
- ② 정부가 중소기업의 동향을 고려해 강구하려고 하는 시책을 문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때 의견제시(제11조)
- ③ 경제산업대신(經濟産業大臣) 또는 관계 각 대신(大臣)의 자문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심의 및 의견제시(제27조)
- ④ 중소기업기본법 이외의 중소기업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사항 처리(제27조)

IV. 하도급에 대한 규제

1. 일본의 하도급관련법제¹³⁾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이 사회문제가 되자 1954년에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에 관한 인정기준’을 제정한 것이 하도급거래 규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동 인정기준은 규제대상 및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는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1956년 6월에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이하 하청법이라 함)’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이 법은 현재까지 하도급거래규율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1956년 당시는 일본의 독점금지정책이 매우 소극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하청법의 내용 역시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및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1970년에는 하도급관계의 일신과 하도급기업의 진흥을 위해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하청법 제정 이전부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규율하는 내용을 ‘건설업법’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건설업 부문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하청법이 아닌 건설업법이 적용된다.

이상 하도급거래 관련법령의 체계를 보면, 하청법과 건설업법이 불공정한 하도급

13) 일본의 하도급관련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이효경, “일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도와 시사점”, 상사판례연구(제24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373-375면; 中山武憲, “下請取引公正化に關する日韓兩國法制の比較檢討”, 北大法學論集 54(5),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學研究科, 131-132면 참조.

거래관계를 규제하고,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과 건설업법

1)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

(1) 목적

하청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¹⁴⁾

(2) 적용범위

하청법은 제조 위탁(금형 제조도 포함), 수리 위탁,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의 경우에 적용된다. 본래 제조 위탁과 수리 위탁에만 적용되었으나 2003년 개정으로 제조 위탁에 금형 제조를 포함시켰고,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과 역무 제공 위탁을 도입하였다.¹⁵⁾ 정보성과물이란 ① 프로그램, ② 영화·방송, 그 외 영상과 음성, 그 밖의 음향에 의해 구성된 것, ③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러한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와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것, ④ 이 외에 이것들과 유사한 것으로 정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항). 한편 역무 제공 위탁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는 제외하고 있다(제2조 제4항). 앞서 본 것처럼 건설분야의 하도급거래는 건설업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친사업자(親事業者)¹⁶⁾와 하청사업자 및 재위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친사업자라 한다(제2조 제7항).

14) 이효경, 앞의 논문, 374면.

15) 이윤보 외, 일본의 중소기업 혁신 관련법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청 발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중소기업학회, 60면.

16) 친사업자는 원사업자를 뜻한다.

〈표 1. 친사업자의 정의〉

제1호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인 사업자로,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3억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수리위탁,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을 한 경우
제2호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천만 엔을 초과하고 3억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로,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천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수리위탁,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을 한 경우
제3호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 엔을 초과하는 법인인 사업자로,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해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을 한 경우
제4호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천만 엔을 초과하고 5천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로,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천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해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을 한 경우

한편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하청사업자라 한다(제2조 제8항).

〈표 2. 하청사업자의 정의〉

제1호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3억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로, 전항 제 1호에 규정한 친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 수리 위탁,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을 받는 경우
제2호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천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로, 전항 제 2호에 규정한 친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 수리 위탁,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을 받는 경우
제3호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로, 전항 제3호에 규정한 친사업자로부터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 또는 역무 제공 위탁을 받는 경우
제4호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이나 출자총액이 천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로, 전항 제 4호에 규정한 친사업자로부터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 또는 역무 제공 위탁을 받는 경우

재위탁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즉,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총액이 천만 엔을 초과한 법인인 사업자(편의상 제1사업자라 함)¹⁷⁾로부터 「① 임원임면, 업무집행 또는 존

17) 제1사업자, 제2사업자, 제3사업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첨부한 용어이다.

립에 관하여 지배를 받고, ② 제조 위탁, 수리 위탁,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역무 제공 위탁을 받는 법인인 사업자(편의상 제2사업자라 함)」가, 그 제조위탁 등에 관계된 제조, 수리, 작성 또는 제공 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재위탁을 한 경우에 있어, 재위탁을 받는 사업자(편의상 제3사업자라 함)가 제1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위탁 등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전항 각호(제2조 제8항)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게 되면,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 재위탁을 한 사업자(제2사업자)는 친사업자로, 재위탁을 받는 사업자(제3사업자)는 하청사업자로 간주한다(제2조 제9항).

(4) 대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하도급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이다. 하청법의 가장 큰 목적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청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의2).

-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친사업자가 하청사업자의 급부내용을 검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친사업자가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로부터 지급기일을 기산한다. 이때 지급기일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로 정해져야 하는데 60일의 기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제1항).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친사업자가 하청사업자로부터 급부를 수령한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
-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경우: 친사업자가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의 전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

한편 친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후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지급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미지급금액에,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하청사업자에 대해 지연이자로서 지급해야 한다(제4조의2).

(5) 친사업자의 준수사항

친사업자는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하청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제4조 제1항).

- ①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하청사업자로부터의 급부수령을 거절하는 행위(제1호)

- ② 하도급대금을 그 지급기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2호)
- ③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감하는 행위(제3호)
- ④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후 하청사업자에게 그 급부와 관계된 물건을 인수하게 하는 행위(제4호)
- ⑤ 하청사업자의 급부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급부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부당하게 정하는 행위(제5호)
- ⑥ 하청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을 균질하게 하거나, 개선을 도모하거나,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가 지정한 물건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역무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제6호)
- ⑦ 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친사업자에게 제4조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청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을 이유로 해서 거래수량을 감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제7호)

한편 친사업자는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하청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된다(제4조 제2항).

- ① 자기(친사업자)에 대한 급부에 필요한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를 자기(친사업자)로부터 구입시키는 경우,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원재료 등을 이용하는 급부’¹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액’¹⁹⁾으로부터 당해 원재료 등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당해 원재료 등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시키는 행위(제1호)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일반 금융기관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제2호)
- ③ 자기(친사업자)를 위해 금전, 역무, 그 밖에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시키는 행위(제3호)

18) 하청사업자가 완성하여 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본래의 급부.

19) 친사업자가 하청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 ④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하청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후에 급부를 다시 하도록 하는 행위(제4호)

(6) 권고 및 제재조치

친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사업자에게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제7조).²⁰⁾ 그리고 친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는 경우에는 친사업자의 그 권고에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 독점금지법 제20조 및 제20조의6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²¹⁾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친사업자가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독점금지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건설업법(建設業法) 중 도급계약 관련 부분

일본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는 건설업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청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하청법 제2조 제4항).²²⁾ 건설업법은 총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3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제3장의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하청법과 유사하다.

20) 하청법 제7조는 준수하지 않는 의무의 유형에 따라 상세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1) 독점금지법의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독점금지법 번역본의 출처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동아시아->일본(<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overview>)).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 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배제조치)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 계약조항의 삭제 등 그러한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제20조의6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제2조 제9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한함)를 한 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날부터 행위가 소멸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기간이 3년이 넘는 때에는 그 행위가 소멸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간으로 함)에 행위의 상대방과의 사이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그 행위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 대한 것인 경우는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구입액으로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복수인 경우는 그 행위의 각각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 또는 구입액의 합계액으로 함)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0만 엔 미만인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다.

22) 이효경, 앞의 논문, 392면.

부당하게 낮은 도급대금은 금지되며(제19조의3), 부당하게 사용자재를 강제구입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제19조의4). 위탁, 그 밖에 여하한 명의를 불문하고, 보수를 얻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건설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4조). 원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제24조의2),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늦어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제24조의3).

3. 하청중소기업진흥법

하도급관련법제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일 수밖에 없다. 즉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이 하도급거래관계의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관련법제 중에도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것이 하청중소기업진흥법(下請中小企業振興法)이다.

이 법은 하청중소기업의 경영기반강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하청기업진흥협회에 의한 하도급거래의 알선 등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하도급관계를 개선하여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자주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유효하게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친사업자 및 특정하청조합 등은 당해 친사업자 발주분야의 명확화, 당해 특정하청조합 등의 구성원인 하청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의 도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기술의 향상 및 사업의 공동화, 그 밖에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하청중소기업 진흥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 당해 진흥사업계획이 적당한 취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제5조). 진흥사업계획에는 진흥사업의 목표 및 내용, 진흥사업의 실시시기, 진흥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자금의 액 및 그 조달 방법을 기재해야 하며(제5조 제2항), 친사업자는 특정하청조합 등이 진흥사업계획의 작성에 대해 협의하려는 취지를 밝혔을 때에는 당해 특정하청조합 등과 협의하여 진흥사업계획의 작성에 협력해야 한다(제5조 제3항). 정부는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확보 또는 그 유통의 알선을 위해 노력한다(제9조). 한편 하청기업진흥협회를 설립하여 하도급거래의 알선, 하도급거래에 관계된 고충 또는 분쟁에 관한 상담, 그 해결에 대한 알선 또는 조정,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제11조).

V.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자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1. 목적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영역 침해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다.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일명 SSM) 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일본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과 대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자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이하 사업활동조정법이라 함)’이 197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업자의 사업개시 또는 확대에 관하여, 일반소비자 등의 이익보호에 배려하면서 그 사업활동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대기업자의 의무

대기업자는 사업의 개시 또는 확대에 즈음하여 당해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제3조),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사이에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성의 있게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

3. 조사, 조정의 신청, 조정권고 및 조정명령

1) 조사(제5조)

- ① 신청의 주체와 대상: 중소기업단체가 주무대신(主務大臣)에게
- ② 신청의 사유: 대기업자가 당해 특정사업과 동종사업에 관하여 당해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인 상당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개시 또는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정될 때
- ③ 신청의 내용: 당해 계획의 내용(개시 또는 확대의 시기, 규모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의 신청(제6조)

- ① 신청의 주체와 대상: 중소기업단체가 주무대신에게
- ② 신청의 사유: 대기업자가 당해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에 관계되는 특정사업과 동종의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확대를 하는 것이, 당해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인 상당수 중소기업자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품 또는 역무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③ 신청의 내용: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3) 조정권고(제7조)

- ① 주체 및 대상: 주무대신이 대기업자에게
- ② 요건: i)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ii) 당해 신청을 한 중소기업단체 및 당해 신청에 관계된 대기업자 간에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태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고, iii) 당해 사태 발생을 회피하는 것에 의해 중소기업사업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③ 절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의견 청취
- ④ 내용: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대의 시기를 늦추거나, 당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권고 불준수시 조치: 대기업자가 권고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4) 조정명령(제11조)

- ① 주체 및 대상: 주무대신이 대기업자에게
- ② 요건: i) 조정권고를 받은 대기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를 공표한 후에도, ii) 여전히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따른 조치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iii) 제6조에 규정한 사태가 발생함에 의해, iv) 조정 신청을 한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인 상당수의 중소기업자의 사업 계속에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③ 절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의견 청취
- ④ 내용: 당해 권고에 따른 조치를 집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벌칙: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4.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동법은 대기업자에 대한 조사, 조정권고 등의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도도 규정하고 있다. 즉 주무대신은 대기업자에게 조정권고를 할 때, 조정의 신청을 한 중소기업단체에 대해 당해 권고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반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당해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인 중소기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설비의 근대화, 기술의 향상, 사업의 공동화, 그 밖에 그 사업활동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시하고 필요한 지도를 행한다(제10조).

VI. 결론 - 한국과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법제와 우리나라의 관련법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하청법과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라 함)’은 모두 법의 적용범위, 원사업자의 의무,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형태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²³⁾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원사업자는 물론 발주자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에 대한 많은 의무를 부과하여 하도급사업자의 보호를 충실히 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하청법은 그렇지 못하는 등²⁴⁾ 우리법이 일본의 법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⁵⁾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범위 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생협력법의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업조정 신청(제32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제33조) 등 일본의 사업활동조정법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이 조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제41조 제2항 제3호), 일본의

23) 이효경, 앞의 논문, 390면.

24) 中山武憲, 앞의 논문, 145면.

25) 이효경, 앞의 논문, 390면.

사업활동조정법에 비해 무겁게 벌하고 있다.²⁶⁾ 그리고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이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35조),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36조)과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 등에게 금융·세제상의 지원(제37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업활동조정법에 없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은 사업조정 신청을 하여 사업조정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34조의2)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의 사업활동조정법은 조정의 신청을 한 중소기업단체에 대해 주무대신이 사업활동의 개선을 위한 방책을 ‘지시’하고 필요한 ‘지도’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러한 양 법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생협력법제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법제가 일본의 입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²⁷⁾ 앞으로도 상생협력법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일본의 법제 동향에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문헌

- 島川 勝, “日本の中小企業法の問題点とロースクール教育”,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법제의 비교와 과제(한국법제연구원·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中山武憲, “下請取引公正化に關する日韓兩國法制の比較検討”, 北大法學論集 54(5),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學研究科.
- 이효경, “일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도와 시사점”, 상사판례연구(제24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윤보 외, 일본의 중소기업 혁신 관련법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청 발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중소기업학회.

26) 일본의 경우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27) 일본의 하청법과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각각 1956년, 1985년에 제정, 일본의 사업활동조정법과 우리나라의 상생협력법은 각각 1977년, 2006년에 제정.

웹사이트

- 동반성장위원회(<http://www.winwingrowth.or.kr/introduce/intro.jsp>).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동아시아->일본(<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overview>).
- 일본 2012년 중소기업백서(<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4/H24/index.html>).
- 일본 총무성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http://law.e-gov.go.jp/>).